

한권으로 끝내는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사회보험법

이주현 노무사

새흐름

제6판 머리말

사회보험법은 방대한 분량에 비해 암기할 사항이 많고, 같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이 다른 내용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1차에만 출제되는 과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부를 소홀히 하여 과락으로 시험에 실패하는 수험생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1차 과목에 불과한 사회보험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수험 전략적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법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합격에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 및 공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독성에 주안점을 두어 작성하였습니다. 법조문의 경우 내용이 길어 읽다보면 놓치기 쉬우므로 줄을 바꾸거나 적절한 제목을 달아 구분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파랑색 글씨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구분하여야 하는 부분, 헛갈리기 쉬운 부분 등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파랑색 글씨만을 공부하는 우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일반 서적과 달리 최대한 수험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어적인 문법이나 띄어쓰기가 아닌, 암기에 편한 관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3. 이론에는 분량을 줄이고, 암기가 쉽도록 약어(예컨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법으로 표기)를 섞어 사용하였으나, 기출문제에서는 기출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출입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여러 번 풀어보아야 합니다. 사보법은 일 년에도 여러 차례 개정이 있는 만큼 큐넷 등에서 종전 기출문제를 구하여 푸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출제 당시와 현재 시점의 답이 많이 다르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교재의 기출문제 부분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 조문번호는 무시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론 중 조문번호를 소제목에 기재한 부분은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 이므로 공부강약 조절 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6. 보충교재 등으로 분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 교재의 내용을 여러 번 숙지하는 것이 높은 점수 확보에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불안감 때문에 별도의 교재(객관식문제집 포함)를 따로 구매하거나 공부하지 않도록 합니다. 불안감은 수험공부의 가장 큰 적입니다.
7. 기본이론과 기출문제를 충분히 숙지한 후 공부량을 늘리고 싶을 때 OX문제를 추가로 풀니다.
8. 출간 이후 개정사항은 매년 5월 첫 번째 주에 공인노무사 수험카페인 “노무사를 꿈꾸는 사람들(<http://cafe.naver.com/cpla00>)”의 사회보험법 공부방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영감을 주신 김광훈 노무사님과,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1년 2월
이주현 노무사

약어 정리

- 징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재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보법 = 고용보험법
연금법 = 국민연금법
건강법 = 국민건강보험법
사기법 = 사회보장기본법
징수령 = 징수법 시행령
산재령 = 산재법 시행령
고보령 = 고보법 시행령
연금령 = 연금법 시행령
건강령 = 건강법 시행령
사기령 = 사기법 시행령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건강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정직능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직능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재예방심의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노동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可 = 할 수 있다.
++... =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
Σ = 총 합계
근 = 근로자
사 = 사용자
※ = 참고
§ = 조

Contents

차 례

제1부 핵심정리

제1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

제1장 총 칙	2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4
제3장 보험료	7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22
제5장 기 타	23
제6장 특 례	24
제7장 벌 칙	26

제2편 고용보험법 ... 28

제1장 총 칙	28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32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34
제4장 실업급여	43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58
제6장 고용보험기금	61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관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62
제8장 기 타	64
제9장 고용보험 특례	65
제10장 벌 칙	67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68

제1장 총 칙	68
제2장 근로복지공단	71
제3장 보험급여	72
제4장 근로복지사업	96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97
제6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98
제7장 적용특례	102

제8장 벌 칙	104
제4편 국민연금법	106
제1장 총 칙	106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109
제3장 국민연금공단	115
제4장 연금급여	117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130
제6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136
제7장 기 타	137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140
제1장 총 칙	140
제2장 가입자	142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45
제4장 보험급여	146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2
제6장 보험료	153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160
제8장 기 타	161
제9장 벌 칙	166
제6편 사회보장기본법	168
제1장 총 칙	168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170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171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173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74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176
제7장 기타 - §39~41	176

제2부 문제(OX · 기출)

제1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178	
제1장 OX문제	178
제2장 기출문제	200
제2편 고용보험법 ... 228	
제1장 OX문제	228
제2장 기출문제	255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93	
제1장 OX문제	293
제2장 기출문제	325
제4편 국민연금법 ... 365	
제1장 OX문제	365
제2장 기출문제	381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 392	
제1장 OX문제	392
제2장 기출문제	404
제6편 사회보장기본법 ... 417	
제1장 OX문제	417
제2장 기출문제	428



제1부
핵심정리

제1장 총 칙

01 목적 노③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사무의 효율성 높임

02 용어의 정의 - §2, §3, 령§2, 령§3

보험노③	고용보험법(이하 '고보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따른 산재보험을 말한다.		
근로자 노③	고용	산재	연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 이사, 임원 포함)
보수 노③⑭⑰	<원칙>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예외> 고용보험료 징수시 근로자가 휴직,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받은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품은 보수로 봄
	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 • 보수 관련 자료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소재지 파악 곤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기준보수)을 보수로 할수있다.	
기준보수 노⑭⑰⑱	기준보수의 결정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월 단위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수있다.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 월단위 기준보수 적용
			단시간근로자, 시간급근로자, 일급근로자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 적용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예술인 에는 월단위 기준보수 적용
보수총액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수액의 총액		
발주자			
원수급인 노⑭	하도급	발주자 ← (직접수행시) - 발주자가 해당부분의 원수급인 수급인 ← (원수급인) -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	
	재하도급	수급인 ← (하수급인) -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	
하수급인 노⑭⑰⑱	※ 도급 :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정보통신망 노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		

총공사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및 그 공사의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		
총공사금액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 포함)		
상시근로자수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원칙	$\frac{\text{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수의 합계}}{\text{전년도의 조업개월수}}$
		예외	산재보험료를 결정특례(개별실적요율) - 전년도 7.1~기준년도 6.30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건설업에서 근로자수 확인 곤란시	$\frac{\text{전년도 공사실적액} \times \text{전년도 노동비율}}{\text{전년도의 건설업 월평균보수} \times \text{조업개월수}}$ 로 산출한 수 ▶ 공사실적액? 총공사실적액 -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 • 건설업 월평균보수?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수 5명 이상인 건설업임금을 기준으로 산정·고시하는 평균보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03 보험사업의 관장, 수행주체 - §4, 고보법§3, 산재법§2, 국민연금법§2, 국민건강보험법§2

구분	고용	산재	연금	건강
관장	고용노동부장관(이하 '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하 '복지부장관')	
수행주체 (관장주체로부터 위탁받아서) 노④⑬	근로복지공단 (단,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등의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 (단, 보험료 등의 징수업무 중에서도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가산금의 징수업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등 -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국민연금공단 (이하 '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강공단')

0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 §4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	--

05 보험의 가입 - §5, §6

당연가입 노⑩⑬⑱	법 적용사업	고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적용제외근로자는 제외)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임의가입 노⑫⑯	법 적용제외사업	고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공단의 승인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可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 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 可
의제가입 노⑫⑬	고용·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제외사업에 해당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날부터 (임의)가입한 것으로 본다.(○→x=○)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사업운영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그날부터 1년 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근로자無=○)	

정리 가입자	고용	근로자	실업급여보험료 근로자50% + 사업주50%부담
		사업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100% 부담
	산재	사업주	사업주가 100%부담
		연금 국내거주 국민 (18세이상 ~60세미만)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사업주)
	지역가입자		가입자 본인 100% 부담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건강	국내거주 모든국민	직장가입자 (근로자, 사업주, 공무원,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분: 근로자50% + 사업주50%부담 ▶ 공무원: 공무원50% + 국가·지자체50% ▶ ①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근무교원: 가입자50% + 학교30% + 국가20% ▶ 교직원(①제외): 가입자50% + 학교50%
		지역가입자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한 자)	가입자 본인 100% 부담
정리 피보험자	고용	근로자 + 특례적용자	
	산재	근로자 + 특례적용자	
	연금	가입자	
	건강	가입자, 피부양자	

06 보험의 해지 - §5, §6

보험계약의 해지 노1012	당연가입사업	해지 불가	
	임의가입사업	해지 가능 단,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해야 한다.	고용보험 해지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 공단의 승인 필요
	의제가입사업		산재보험 해지시 공단의 승인 필요
직권소멸 노1012141619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07 사업의 일괄적용 - §8, 령§6, 령§7

개념도			
의의	정수법 적용시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		
당연 일괄적용	+ 사업주가 동일인 +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 사업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할 것 (대통령령 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		해지 불가
임의 일괄적용 (X=O)	+ (당연)일괄적용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동일인 (단, 산재보험은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 + 공단 승인 (승인받으면 신청서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일괄적용받음)		▶ 공단 승인 받아 해지 ▶ 해지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발생
의제 일괄적용 (O→X=O)	당연일괄적용 받는 사업주가 사업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임의)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원칙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건설업에 한함	
	예외	최초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	건설업등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되는 경우,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관련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에 한정됨.)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인정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승인받아 사업주로 간주될 수 있는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08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 §7, §10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연가입사업이 시작되거나 임의가입사업이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관계는 성립하며, 보험관계의 성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함 사업의 폐지·종료, 보험계약의 해지, 공단의 보험관계 소멸결정 등의 사유발생시 보험관계는 소멸함 	
성립일 - 그날 노1517	당연가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사업이 시작된 날 ▶ 사업규모 변동 등으로 당연가입사업이 된 경우에는 해당하게 된 날
	임의가입사업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일괄적용사업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도급사업에서 하수급인이 보험료납부를 인수한 경우	그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
소멸일 - 다음날 노10111517	사업의 폐업·종료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사업주의 사망은 소멸사유가 아님)
	보험계약해지 (임의가입,의제가입)	해지에 관해 공단의 승인 받은 날의 다음 날
	공단의 직권소멸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경우)	공단이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사업운영중 근로자 無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09 보험관계의 신고 - §11, §12

신고 - 14일 노1013171921	보험관계 성립·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단, 보험관계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사업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일괄적용관계 성립·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일괄적용사업에서 각 사업의 개시·종료일부터 14일 이내 (단,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은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 (사업 종료신고는 고용보험만)	
	보험관계의 변경**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 변경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변경신고사항: 사업주의 이름(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건설공사 또는 별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등
	공단에 신고한다.	
	※정리하면 사업장 관련 보험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되, 14일 이내 종료되면 종료전날까지 신고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변경시에만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	



제2부
문제(OX·기출)

- 001 징수법에서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
- 002 징수법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 003 법인의 이사와 임원은 징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004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
- 005 보수총액이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총액을 의미하며,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 006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그 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으로 본다. ()
- 007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산재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
- 008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 009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 0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 011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

005 (X)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수액의 총액을 말함

006 (X)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수급인으로 본다.

009 (X)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010 (X)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공단 승인 받으면 가입 가능

정답 >> 001(O), 002(O), 003(O), 004(O), 005(X), 006(X), 007(O), 008(O), 009(X), 010(X), 011(O)

- 012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013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켜야 한다. ()
- 014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다음 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 015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 016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은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017 당연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018 일괄적용관계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발생한다. ()
- 019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를 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 020 건설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
- 021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원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한다. ()

- 012 (X) 산재보험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
- 013 (X) 소멸시킬 수 있다.
- 014 (X) 그날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 016 (X) 당연가입사업장은 보험계약 해지 불가
- 017 (X)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19 (X) 발주자 ⇒ 원수급인
- 020 (X)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국내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국내에 영업소를 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
- 021 (X) 원도급공사가 아니라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이다.

정답 >> 012(X), 013(X), 014(X), 015(O), 016(X), 017(X), 018(O), 019(X), 020(X), 021(X)

01 <노무 20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의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임의가입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 ④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 ⑤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02 <노무 20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②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③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④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⑤ 체납된 보험료의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01 ① 임의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징수법 §5).

02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징수법 §28의3).

②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징수법 §28의4).

③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징수법 §28의2).

⑤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의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징수법 §28①).

정답 >> 01 ① 02 ④

03 <노무 2010>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A)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B)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① A: 7일 B: 7일
- ② A: 7일 B: 14일
- ③ A: 14일 B: 14일
- ④ A: 14일 B: 30일
- ⑤ A: 30일 B: 30일

04 <노무 2010 유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②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개선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확정보험료에 따라 정산한다.
- ③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 ④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5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⑤ 고용보험료율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03 ③ 징수법 §11②.

- 04 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징수령 §12).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이다(징수법 §14③).
- ②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지문은 건설업과 별목업에 대한 설명이다(징수법 §16의2)
- ③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징수법 §13)
- ④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징수법 §13③).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즉 계속하여 징수한다.

정답 > 03 ③ 04 ⑤

05 <노무 20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③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전적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⑤ 체납처분의 목적물에 보험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06 <노무 20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①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②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③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④ 경매가 개시된 경우
- ⑤ 법인이 분할된 경우

05 ⑤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06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지만, 법인이 분할된 경우는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수법 §27의2).
보기 외에 1) 지방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도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05 ⑤ 06 ⑤

이주현 노무사

- 전) LG그룹, 롯데그룹 사회보험법 강사
합격의 법학원 사회보험법 전임강사
서울시청 희망노동아카데미 노동교육 강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중앙보육정보센터 노무 전문상담위원
서울시 글로벌센터 노무 전문상담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발주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근로자 이익대변 기재 활성화 방안의 모색” 자문위원
- 현) 노무법인 신영 대표
한림법학원 사회보험법 전임강사
수원시 장애인보치아연맹 부회장
오케스트라 심포니송 운영이사

[제6판]

한권으로 끝내는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사회보험법

2016년 4월 10일 초 판 제1쇄발행
2021년 2월 15일 제 6 판 제1쇄인쇄
2021년 2월 25일 제 6 판 제1쇄발행

저 자 이 주 현
발행인 이 중 은
발행처 새 흐 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95 삼부골든타워 212호
전 화 (02) 713-3069 FAX (02) 713-0403
등 록 2014. 1. 21, 제2014-000041호(윤)
홈페이지 www.sehr.co.kr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첩부를
생략함

파본은 바뀌드립니다.

본서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

정 가 29,000원

ISBN 979-11-6293-216-2